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437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 타워 12층
 - 규모 : 613.59 m^2
 - 위치도



- 소속기관 : 종합재가센터 12개소, 데이케어센터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23.7월기준)

- 종합재가센터(12개소)

연번	기관명(구분)	소재지	개소일
1	성동종합재가센터(간호특화형)	성동구 아차산로33 2층	'19. 7.23.
2	은평종합재가센터(기본형)	은평구 진흥로77 3층	'19. 8.28.
3	강서종합재가센터(기본형)	강서구 공항대로325 3층	'19. 9.18.
4	노원종합재가센터(확대형)	노원구 한글비석로432 3층	'19.10.23.
5	마포종합재가센터(통원형)	마포구 마포대로11길44-81 지하1,지상2층	'20. 1.17.
6	송파종합재가센터(기본형)	송파구 위례성대로 18(방이동), 1305호	'20. 9.28.
7	영등포종합재가센터(기본형)	영등포구 선유로 130(양평동), 203호, 204호	'20. 9.28.
8	양천종합재가센터(기본형)	양천구 목동로 177(신정동), 8층	'20. 9.28.
9	도봉종합재가센터(기본형)	도봉구 도봉로136길7(창동), 202호	'20. 11.18.
10	중랑종합재가센터(기본형)	중랑구 중랑역로 62(중화동), 3층	'20. 11.30.
11	강동종합재가센터(기본형)	강동구 양재대로 1410(둔촌동), 6층	'20. 12.14.
12	서대문종합재가센터(기본형)	서대문구 연희로 142(연희동), 2층	'20. 12.14.

- 데이케어센터(2개소)

연번	기관명(구분)	소재지	개소일
1	마포 초록숲 데이케어센터	마포구 마포대로 11길44-81 지하1층	'20. 9. 9.
2	강서 든든 데이케어센터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2~3층	'20. 11. 2.

- 국공립어린이집(7개소)

연번	기관명(구분)	소재지	개소일
1	노원든든 어린이집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20.3.2.
2	서대문든든 어린이집	서대문구 거북골로100	'20.5.1.
3	중랑든든(새우개하나) 어린이집	중랑구 용마산로 139다길17	'20.7.1.
4	은평든든(응암행복) 어린이집	은평구 은평로220	'20.7.1.
5	영등포든든 어린이집	영등포구 대림로35 가길 9	'20.9.1.
6	강동든든 어린이집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110	'20.9.21.
7	송파든든 어린이집	송파구 위례서이로25	'21.3.1.

- 관련법령 (출연금 지원)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나. 주요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사업

다. 총 출연금(안) : 14,799,775천원

라. 산출근거(안)

- 출연금 14,799,775천원 = (총예산 22,282,168천원) - (영업수입, 보조금, 기타수입 등 7,482,393천원)

마. 출연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필요
 -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서비스 제공으로 품질 제고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간 지원 강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문성훈 (☎ 2133-7332)